보건복지부 | 보도참고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11. 4.(수)

희귀·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

본인부담률 10% → 7% 인하 추진

-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11.4.~11.16.) -

- 약 136만 명 대상,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 약 75만 원 → 약 53만 원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**희귀·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%에서 7%로 낮추는** 내용의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**11월 4일(수)부터 11월 16일(월)까지 입법예고**한다고 밝혔다.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·중증난치질환자 **약 136만 명**의 **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** 것으로 예상된다.

희귀·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고, 그만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쌓인다. 정부는 이들 환자에게 **산정특례***를 적용해 왔으나, 현재 **희귀·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(10%)은 암·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(5%)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.**

*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(일반 환자 본인부담률: 입원 20%, 외래 30~60%)

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**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(10%→7%→5%)의 첫 단계**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. 정부는 **올해 12월 7%**에 이어 **2028년 상반기에는 5%**까지 낮출 계획이다.

<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>

▲ 대상 :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·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

▲ 내용 : 해당 질환 진료 시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 10% → 7%
(비급여 진료비,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(50%)은 현행 유지)

▲ 시행 : 2026년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(예정)

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,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**12월 1일부터 시행**할 계획이다.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11월 16일(월)까지** 국민참여입법센터(opinion.lawmaking.go.kr)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.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(www.mohw.go.kr) → 정보 → 법령 → 입법/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"이번 개정은 **희귀·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다**"라며, "**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**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장영진 (044-202-27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성규 (044-202-2702)
<산정특례>	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	책임자	과 장	유정민 (044-202-2730)
		담당자	주무관	온성하 (044-202-273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